발송번호: 9-5-2025-027516835

발송일자: 2025.03.19.

수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66 (만

년동) 310호(골드벤처타워)(특허법률사무

소케이원)

권도훈 귀하(귀중)

35203

૾ ^{특 허 청} 특허결정서

명 주식회사 누크랩스 (특허고객번호: 120220502860) 출 원 인 성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100, 5층(양재동, 윤화빌딩) 대 명 권도훈 리 인 성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66 (만년동) 310호(골드벤처타워)(특허법률사무소케이원) 발 명 자 성 명 안태웅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3 계룡리슈빌아파트, 111동 104호 호 10-2024-0078859 출 원 번 의 칭 보험증권 거래 시스템 명 명 청 구 항 수 6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됩니 다.)

[특기사항]

이 건 발명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2025.03.19 까지 출원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조약우선권 주장을 통해 진입하는 출원에 의한 특허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 또 는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끝.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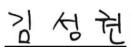
- 1. JP2020532817 A
- 2. KR1020040021252 A
- 3. KR1020230089725 A
- 4. KR102233364 B1

2025.03.19.

특허청 전기통신심사국

방송미디어심사팀

심사관 김성권





<< 안내 >>

【 분할출원, 재심사 청구 및 전자등록증 발급 】

- 1. 출원인은 이 특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에 분할출원할 수 있 습니다(재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일까지).
- 2. 출원인은 이 특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시에는 특허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 3. 2018. 7. 1. 설정등록부터는 특허로(http://www.patent.go.kr)에서 「전자등록증 신청」을 사전에 하거나,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등록증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수령으로 선택하면 설정등록료가 1만원 차감됩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감면). 전자등록증은「전자등록증 수신함」을 통해 전자등록증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전자등록증을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동봉된 납입고지서로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서면 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
- ※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로, 이 통지서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방송미디어심사팀 ☎042-481-5698(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허로(www.patent.go.kr) 또는 특허청(www.kipo.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심사 진행 상황, 서류 제출 및 절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등록)료·수수료·등록면허세·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한 요금 고지를 위해 본 안내서를 송부드립니다.
- 2.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 청구항 축소, 상품류 축소 등에 따라 특허(등록)료에 금액 가산 또는 차감이 있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확인하신 후에 특허(등록)료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3. 이 고지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특허청 본청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요금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면제 또는 감면은 발명자와 출원인, 등록권리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 최종 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은행에 제출하지 마시고, 반드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On-Line(특허로)이나 서면(우편, 방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수수료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자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다음 장에 기재된 고객님의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CD기/ATM기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타행이체 시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용)

세입징수관서	특 허 청		
계 좌 번 호	1 2 7 9 9 6 - 6		
납 부 자 번 호	0131-9-5-2025-0275168-35		
출원·등록·심판 번 호	10-2024-0078859		
트립/드로/크 미 스스크	₩255,000원	등록 면허세	₩0원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사유 있을시 감면 적용된 금액	지방 교육세	₩0원
감면사유	없음	인 지 세	₩0원
		차감금액(전자등록증)	- ₩0원
최종 납부할 금액	₩255,000원		
정상납부기일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		
★ 금액기재 앞 난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납부자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66 (만년동) 310호(골드벤처타워)(특허법률사무소케이원)

한국은행취급점 영 수 인

징수결정전 납입 납부서 (수납은행용 또는 한국은행용)

세입징수관서	특 허 청		
계 좌 번 호	1 2 7 9 9 6 - 6		
납 부 자 번 호	0131-9-5-2025-0275168-35		
출원·등록·심판 번 호	10-2024-0078859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	₩255,000원	등록 면허세	₩0원
	감면사유 있을시 감면 적용된 금액	지방 교육세	₩0원
감면사유	없음	인 지 세	₩0원
		차감금액(전자등록증)	- ₩0원
최종 납부할 금액	₩255,000원		
정상납부기일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		
* 금액기재 앞 난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위와 같이 수납 의뢰하오니 영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훈



한국은행취급점 영 수 인

* 수납기관에서는 굵은 선 안의 내용을 반드시 전산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고객 전용 입금 계좌

- * 납부에 이미 이용한 입금 계좌는 재이용할 수 없음
- * 아래의 계좌번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납부 요망

금융기관	계좌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농협은행	790-0594-7000-511		

[참고] 요금의 종류

- 가. 특허료 등록료
- 나. 수수료: ① 출원료 ② 심사청구료 ③ 심판청구료 ④ 국제출원수수료 ⑤ 보정료
 - ⑥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료 ⑦ 그 밖의 수수료
- 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및 상표권의 설정 및 갱신 등록에 한함]
 - 상표권 설정 및 갱신등록 : 9.120원(등록면허세: 7.600원, 지방교육세: 1.520원)
 - ·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14,400원(등록면허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 ·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21,600원(등록면허세: 18,000원, 지방교육세: 3,600원)
- 라.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액

《 설정등록료 납부 시 유의사항 》

- □ 2021년 1월 4일부터 설정등록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정확한 경우 설정 등록료를 납부한 날(당일) 설정등록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납부 전 제출해야 할 선행서류(분할출원, 권리관계변경 등)가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의 위 사항을 참고하여 **설정등록료를 납부한 이후에 등록신청반려요청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등록)료 납부 안내>>

1. 설정등록료(1~3년차분) 및 연차등록료

권 리	구 분	설정등록료 (1~3년분)	연차등록료				
면 디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25년
특 허	기본료	★매년 13,000원씩 39,000원	매년 36,000원	매년 90,000원	매년 216,000원	매년 324,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2,000원씩 36,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49,000원	매년 49,000원	
실용신안	기본료	★매년 12,000원씩 36,000원	매년 25,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60,000원	매년 24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4,000원씩 12,000원	매년 9,000원	매년 14,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20,000원	
디자인	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10,000원	
	일부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10% 할인('19.12.31개정)

2. 납부기간

- ① (설정등록료)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연차등록료) 제4년분 이후의 연차등록료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당해연도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예:설정등록일이 2014.2.4.인 경우 2017.2.4.까지 4년차 등록료를 납부) 그리고,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매월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설정등록료에 대한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출원포기로 간주되어 등록받을 수 없으며, 연차등록료에 대한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방법

- ①「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을 이용하는 방법 :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달받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상의 정상납부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 (http://www.giro.or.kr)에서 등록료를 납부합니다.(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②「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이용하는 방법 :
 - ① 「납부서」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특허청(서울사무소 등)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특허료를 납부합니다.(단, 금융기관영업시간 이후에 납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
 - ①「납부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납부서」를 작성한 후 등록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환증서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보내야 합니다.
 - * 보낼 곳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등록과

4. 등록료 감면(면제) 및 일부청구항(일부디자인)을 포기하는 경우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학생, 중소기업 등이 등록료를 감면(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와 함께 감면 또는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설정등록료 납부시 일부 청구항(일부디자인)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포기대상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한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앞쪽)

납 부 서

	<u>-</u>
【납부구분】□설정 등록료	□연차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2회차 납부	□드로크 비져
□지정상품·업무 추가 등록료 【등록권리자】	□등록료 보전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분】)(기재요령 제2호 참조)	
【납부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대리인번호)】) 【주소】	
【ㅜㅗ】 【전화번호】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납부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번호, 등록번호)】	
【청구항(디자인, 상품류)수】	
(【대표 지정상품(업무)의 명칭】)	
(【디자인의 일련번호】)	
(【포기대상】)	
(【납부연차(납부회차)】)	
(【감면사유】)	
(【특약】)	
[특허(등록)료]	
【특허(등록)료】 (【드로머리네】)	
(【등록면허세】) 【합계】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회복신청】	
【회복신청 원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 회복
□ 정당한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	록)출원 및 특허(등록)권 회복
(【특허(등록)증 수령방법】) □전자문서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우편수령
	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특허(등록)증 수령인】)	
(【성명】)	
(【전자우편 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정	덩정신청】 -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납부자	(서명 또는 인)
(대위신청인)	,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출원, 등록단 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세에지 이미 제물인 이야에 적는 제물자규에 점무된 서
의 필증 모든 기세요당 제13호 점모)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출원번호)】)	
, , , , , , , , , , , , , , , , , , ,	